

언론중재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관련 부처간  
충분한 사전조율없이 국무회의에 상정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05서울조정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피신청인 : 한겨레

증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8. 2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한겨레 : 『부처 사전조율도 안됐다』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8일자 2면)

내 용 :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삼성 파주기'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처리가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삼성공화국' 파문의 불길기 국무회의까지 번진 셈이다. 금산법 개정안은 형식상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과

정에서 재검토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갑자기, '일부 부칙 조항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계열사 지분 불법보유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덕수 재경부 장관과 윤증현 금감위원장에게 설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두사람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자 이 경우 정책기획위원장에게 설명하도록 했고, 이 위원장은 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산법 개정안이 형식상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나 내용적으로는 부결된 것과 같고, 잘해야 조건부 통과로 보면 된다"면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건은 사전에 관련부처와 각계 전문가 사이에 충분히 논의된 다음 통과의례로 다뤄지는데 이번 금산법 개정안은 재경부에서 뒤늦게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바람에 관련 국무위원들조차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한겨레신문은 2005년 7월 8일자 2면 『부처 사전조율도 안됐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관계부처간 사전 조율도 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재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부칙 조항의 문제 지적에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동 법안 중 일부 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검토하는 조건이 붙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차관회의 상정전에도 관련 부처간 최종 실무협의를 거쳐 이견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국무회의에서도 조건부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부에서 제안한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본 문 : 본지 지난 6월 3일자 『부처사전조율도 안됐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이 관계부처간 사전 조율도 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재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일부 부칙 조항의 문제 지적에 설명을 하지 못했으며, 위 법안 중 일부 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검토하는 조건이 붙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견 없이 차관회의의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조건부로 통과된 조항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겨레’ 2면에 합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토요일자 제외)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은 중재대상기사의

부제목(일부 부칙조항 문제 지적에…)과 같게하고 본문은 본문 활자체와 동일하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한겨레 : 『반론 신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22일자 2면)

내 용 : 〈한겨레〉6월3일치 ‘금산법, 부처 사전조율도 안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견 없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되었고,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조건부로 통과된 조항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 신청인이 타 대학에 재직중인 남편과 같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표절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05서울조정5  
 청구명 : 정정청구  
 신청인 : 권○○  
 피신청인 : 1. 주간 교수신문  
 2 인터넷 교수신문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5. 8. 2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주간 교수신문 : (1) 『학계, 표절 관행 심각』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4일자 1면)

내 용 : (중략) ㄱ 교대 ㄱ 교수는 비슷한 시

기에 남편인 ㄷ 대학 ㄴ 교수와 같은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ㄱ 교수와 남편인 ㄴ 교수는 같은 설문지를 각각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에게 돌려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 교대는 위 논문에 대해 6곳의 학회, 대학에 표절 여부 심사를 의뢰해 3곳에서 심사를 받아 '표절'로 판정하고 ㄱ 교수에게 '감봉 1개월' 조치를 내렸으나 ㄱ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후략)

(2) 『같은 시기에 남편과 같은 주제 논문 발표』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4일자 3면)

ㄱ 교대 ㄱ 교수는 타 대학에 재직 중인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설문 항목을 사용해 논문을 발표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표절 논란을 빚고 있는 논문은 2003년 초등학교교육지에 발표된 ㄱ 교대 ㄱ 교수의 '예비 초등 교사들의 환경 인식 조사'와 같은 해 한국지구과학회지에 발표된 대구 소재 ㄷ 대 ㄴ 교수의 "지구 환경에 대한 예비 중등 교사의 환경 인식".

실제로 아내인 ㄱ 교수의 영문 초록이 남편인 ㄴ 교수의 영문 초록과 단 한 문장을 빼고는 같아 표절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또 두 논문 모두 '환경인식 검사 도구'로 Kuhn과 Jack-son(1989)이 개발하고, 노경임(2000)이 변안한 NEP(New Environmental Paradigm) 검사도구를 수정, 보완해 사용했다.

검사 결과도 총 21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3.6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후략)

인터넷 교수신문 : (1) 『교수사회 만연한 표절문화』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1일자 1면)  
내            용 : 〈주간 교수신문 보도내용 (1) 참조〉

(2) 『학계, 표절관행 심각』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1일자 2, 3, 4면)

〈주간 교수신문 보도내용 (2) 참조〉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주간 교수신문 2005년 7월 4일자 1면과 3면, 인터넷 교수신문 2005년 7월 1일자 1면과 2, 3, 4면에서 『교수사회 만연한 표절 문화』, 『학계, 표절 관행 심각』 제하의 기사에서 ㄱ 교대 ㄱ 교수가 타 대학에 재직 중인 남편과 비슷한 시기에 논문을 발표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논문의 영문 초록이 단 한문장을 빼고는 모두 같고, 이에 ㄱ 교대는 위 논문에 대해 표절여부 심사를 의뢰해 놓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논문에서 초록은 당해 논문의 기본적인 틀을 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다르다는 것만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검사 도구는 같은 것을 사용했다라도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다는 것일 뿐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던 ㄱ 교수의 승진계약취소처분 및 징계처분취소청구에서 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합의사항

### · 보도문

상기 기사에서 ㄱ 교대 ㄱ 교수가 남편의 논문을 베낀 것이 확실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2개의 기관에서는 표절판정을 하였으나, 한국과학기술원 등 5개 학회 등에서는 표절이 아니라는 판정을 하여 표절여부가 확정된 바 없으며, 권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위반으로 취소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교

수신문' 인터넷 판 관련기사(2건) 본문에 첨부하여 2005년 8월 17일자부터 게시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인터넷 교수신문 :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17일자)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적게는 1일에서 길게는 5일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소자가 열흘에 한번꼴로 외부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자 일각에서는 '진주 교도소가 특정인에게 남다른 배려를 하고있지 않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지난 6월 29일자 15면에 『진주교도소 이상한 수감생활』 제하의 기사에서 수감중인 한 재소자가 지병을 이유로 10일에 한번꼴로 외진을 나가는 등 이상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법집행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건강악화로 인한 적법한 집행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교도소에 수감중인 신청인이 치료를 빙자하여 수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06경남조정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권 ○ ○

피신청인 : 경남일보

중 재 부 : 경남중재부

접 수 일 : 2005. 8. 5.

처리결과 : 합의

### 보도내용

경남일보 : 『진주교도소의 이상한 수감생활』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9일자 15면)

내 용 : 유죄 확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가 지병을 이유로 수감생활 중 평균 10일에 한번꼴로 외진을 나가는 등 이상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법집행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재소자는 지난 3월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총 100여일 수감기간 중 지병을 이유로 지금까지 11회에 걸친 외래진료와 함께 한번 외래진료를 나오면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경남일보는 지난 6월 29일자 15면에 『진주교도소의 이상한 수감생활』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진주교도소 특정 재소자가 지병 악화를 빙자하여 잦은 외래진료를 나가는 등 법집행의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청인은 건강 악화에 의한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남일보 2005년 8월 17일자 15면에 상자기사로 게재 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이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진주교도소의 이상한 수감생활)활자 크기와 같게 하고, 내용활자 크기는 동 기사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남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17일자 15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금품수수, 연구비 유용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추후보도)

사건번호 : 05대구조정1

청 구 명 : 추후청구

신 청 인 : 오 ○ ○

피신청인 : 매일신문

종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05. 8. 5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매일신문 : (1) 『공금횡령 등 혐의, 대학교수 영장』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1일자 31면)

내 용 : 대구북부경찰서는 21일 7대 교수 ○(45)씨에 대해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씨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배정해 준 대가로 돈을 받고,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수는 또 일부 여자 강사들에게 성상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사학위 논문에 탈락한 모 학생의 투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중이다.

(2) 『상아탑 '도덕 불감증'』 제하의 기사 (2005년 6월 22일자 31면)

전·현직 학과장이 포함된 같은 학과 교수들이 무더기로 금품수수,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1일 학생들에게 학점 등 편의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연구비를 착복한 혐의로 경북대 전 교수 오모(45)씨를 구속하고, 같은 과 교수 4명을 연구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전임교수 재직 당시인 2000년 9월부터 1년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록, 인건비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오씨는 또 지난 2000~2004년 소속 대학원 석·박사과정과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뒤 따로 강의한 것처럼 속여 강의료 1천만 원을 챙기고, 출석·학점·시간강사 배정 등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 3명으로부터 4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과 교수 4명도 2001년 12월부터 1년간 대학원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시켜 1인당 100만~400만 원씩 모두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오씨는 여자 시간강사에게 “학과강사로 추천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는가 하면 이 강사에게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03년 5월에는 시간강사 수업 배정을 미끼로 “다른 사람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대신 빌려주라”며 모두 1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박사과정 논문 발표를 미끼로 자신의 지도 학생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받고 학회지에 논문을 실어주기도 했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본지는 지난 6월 21자 31면 『공금횡령 등 혐의, 대

학교수 영장』 제하의 기사에서 대구북부경찰서는 ㄱ 대 ○씨에 대해 연구비 유용, 성상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자 31면에서는 『상아탑 ‘도덕 불감증’』 제하로 ‘○씨는 전임교수 재직당시인 2000년 9월부터 1년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록, 인건비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리고 ○씨는 여자 시간강사에게 학과 강사로 추천해 주겠다고 성관계를 요구하는가 하면 이 강사에게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을 대신 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03년 5월에는 시간강사 수업배정을 미끼로 다른 사람에게 1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대신 빌려주라며 모두 1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결과 ○교수는, 성상납과 금품수수,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오모 교수 성상납 등 일부 무혐의
- 본 문 : 대구지검은 공금횡령 및 성상납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오모 교수 사건(본보 6월 21, 22일자 31면 보도)과 관련해 성상납 및 일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 1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매일신문 2005년 8월 16일자 이전 사회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중재대상기사의 제목(공금횡령...)과 같은 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중재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매일신문 : 『오모 교수 성상납 등 일부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13일자 4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노동부가 노조를 탄압하는 지침을 내려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05서울조정14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노동부 (장관 김 대 환)

피신청인 : 경향신문

중 재 부 :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 2005. 8. 3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경향신문 : 『노동부가 ‘노조탄압 지침’』 제하의 기사 (2005년 7월 13일자 8면)

내 용 : 노동부가 노동부 직장협의회들의 노동조합 전환을 위한 직원 찬반투표에 대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응지침’을 내려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부의 강력대응은 이미 정부부처내 다수의 기관들이 노조간판을 내건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노조전환 찬반투표 관련 대응 철저’라는 제목의 노동부장관 명의 내부 공문에는 이날 실시기로 한 노조 전환 투표와 관련, 상식을 벗어난 갖가지 지침이 담겨 있다.

우선 ▲투표소 설치 사전차단 및 투표소 봉쇄 ▲투

표에 참가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 ▲부서별 방문투표 금지 지시 및 저지 등 투표진행 자체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을 지시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직원은 “투표에 참여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은근한 협박전화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중략)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공무원노조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집단행위의 금지’에 따라 공무원의 투표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7월 13일자 8면에 보도한 『노동부가 ‘노조 탄압 지시’』 제하에서 ‘노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노동부에는 공무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며, ‘탄압지침’이라고 하였으나, 공무원 노조법 시행 전 국가공무원이 노조전환 투표를 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인 바, 위 공문은 정당한 복무관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 지침은 전공노 불법집회 및 총파업 찬반투표 관련 정부 대응지침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응지침”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본 지침이 현행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복무관리 방안을 담고 있으므로 “상식을 벗어난 행위”이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노조탄압 지침 관련 노동부의 입장
- 내 용 : 경향신문 7월 13일자 8면 『노동부가 ‘노조 탄압지침’』 제하의 기사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 노동부에는 공무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으며, 공무

원노조법 시행 전 공무원이 노조전환 투표를 하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노조전환 찬반투표 관련 지침’은 정당한 복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향신문 독자투고란에 2005년 8월 23일까지 게재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경향신문 : 『입장을 밝힙니다』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24일자 2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신청인이 노조위원장 시절 취업비리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06부산조정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이 ○ ○

피신청인 : 경상일보

중 재 부 : 부산중재부

접 수 일 : 2005. 8. 11.

처리결과 : 합 의

### 보도내용

경상일보 : (1)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도 입사 추천』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 28일자 6면)

내 용 : 현대자동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002~2003년 노조를 이끌었던 이모 전 위원장을 비롯해 당시 집행부 여러명도

취업 희망자의 입사를 추천한 사실을 잡고 금품수수가 있었던 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일부 노조 간부가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취업비리 외 성질이 다른 1~2건의 추가 비리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현대차 울산공장 인사·노사협력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한 신입사원 입사구비 서류와 면접 자료 분석과 회사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명의 노조 집행부가 많게는 수명씩 입사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후략)

(2)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어떻게 된겁니까”』 제하의 기사 (2005년 5월 28일자 14면)

현대차 노조의 취업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27일 현대차 울산공장 인사·노무팀 사무실에서 압수한 신입사원 입사 구비서류와 면접 자료, 노무관련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제10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 전 위원장이 직접 입사를 추천한 사례를 여러 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대차 노조의 취업비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후략)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가 지난 5월 28일자 사실과 사회면에 서 현대자동차 노조의 전 위원장이 취업 희망자의 입

사를 추천한 사실을 잡고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이○○ 전 노조위원장은 입사 추천한 사례가 없으며, 입사비리에 연관이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에 의해 밝혀져 사실이 아님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와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5월 28일자 사회면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도 입사 추천』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이○○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입사 관련 비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경상일보 2005. 8. 22.자 14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내용 활자크기는 조정대상 기사의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 경상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8월 22일자 15면)
- 내 용 : <합의사항 참조>